

의안번호	제 315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월 일 (제 278 회)

**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**

발 의 자	김환동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3월 6일

##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

의안 번호	31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3월 6일  
 발 의 자 : 김환동 · 강태원 · 박재국  
 이필용 · 장주식 · 조영재  
 연만흠의원(7인)

### 제안이유

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및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닥불,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의 사전신고(안 제2조)

- 1)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중 소방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2)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방법, 해당지역 또는 장소를 정함.
- 3)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(안 제3조)

- 1) 보일러, 난로, 건조설비, 가스·전기시설 외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2) 불티가 생기는 설비, 가스나 전기 용접·용단기의 관리기준을 정함.
- 3)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모닥불, 연막소독 등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(안 제4조)

- 1) 불피움·연막소독의 사전신고 의무위반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2)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함.
- 3)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##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없음(소방본부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) ①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·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(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)이나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
2. 주거용 콘테이너·비닐하우스 설치 장소
3. 축사시설(돈사·계사·우사시설 등을 말한다) 설치 지역
3.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
5.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
6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

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관리기준) ①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불티가 생기는 설비(그라비아인쇄기·기모기 및 솜털기계 등과 같이 조

작을 할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).

2.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·용단기

②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, 먼지·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과태료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라 징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(제3조제3항 관련)

설비 구분	설비의 관리기준
1. 불티가 생기는 설비	<p>가.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접지(接地)에 의한 방법</p> <p>(2)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% 이상으로 하는 방법</p> <p>(3)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</p> <p>다.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
2.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·용단기	<p>가. 용접·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용접·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</p> <p>(2) 주위의 인화성 물질의 제거</p> <p>(3) 용접·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</p> <p>(4)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</p> <p>(5) 작업구역의 전기·가스·소방시설과 인명대피 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</p> <p>(6)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</p> <p>(7)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</p>

[별표 2]

과태료 부과 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위반사항	해당 법 조문	과태료 금액
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	20만원

[별지 제1호서식]

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서(제2조제2항 관련)

신 고 자	성 명	(전화번호 : )		
	주 소			
예 정 일 시				
연 소 장 소				
연소물품 및 수량				
연 소 목 적 (사유)				
화재 예방상 조치				
관계인 인적사항		성명 :	(전화번호 : )	
<p>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>200 . . . .</p> <p>○○소방본부장(또는 소방서장) 귀하</p>				
※접수 및 처리내용	접 수 자	소속	계급	성명
	접수시간		처리내용	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방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8.3>

- 1. "소방대상물"이라 함은 건축물, 차량, 선박(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), 선박건조구조물,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.
- 2. (생략)
- 3. "관계인"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.
- 4.~6.(생략)

제15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·취급)

- ① (생략)
-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·면화류·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(특수가연물)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화재 등의 통지) ①화재현장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·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.

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8.4>

- 1. 시장지역

2.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
3.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
4.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
5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6. 그 밖에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

**제57조(과태료)** ① [제19조제2항](#)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 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④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[비송사건절차법](#)」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[본조신설 2005.8.4]

## □ 소방기본법 시행령

**제5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)** ① [법 제15조제1항](#)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, 난로, 건조설비, 가스·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·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[별표 1](#)과 같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·

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05.10.20>

**제7조(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)** [법 제15조제2항](#)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10.20, 2008.1.22>

1.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·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
2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. 다만, 석탄·목탄류를 발전(발전)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

나.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,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(석탄·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)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,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,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(석탄·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) 이하로 할 수 있다.

다.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

**제19조(과태료 부과)** ①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이 조에서 "부과권자"라 한다)은 [법 제56조제2항](#)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(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31>

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7.12.31>

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,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>

## 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다중이용업"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.

2.(생략)

②(생략)

제2조(다중이용업)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"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. <개정 2008.12.24>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휴게음식점영업·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)의 합계가 100제곱미터(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) 이상인 것. 다만,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)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.

나.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

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,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·비디오물감상실업·비디오물소극장업
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(이하 "학원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(이하 "수용인원"이라 한다)이 300인 이상인 것

나.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(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)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 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.

- (1)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
- (2)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
- (3)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

4.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

가. 하나의 영업장에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(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)이 100명 이상인 것

나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

5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·제6호의2·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. 다만,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(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)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6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
7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

8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